

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[별표]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<개정 2023. 2. 24.>

| 조치종류 | 조치사유 |
|---------------|--|
| 1. 정정보도문 게재 | 선거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2. 반론보도문 게재 |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3. 경고문 게재 | 경고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써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4. 경고 |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5.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| 주의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써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6. 주의 |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7. 공정보도 준수촉구 |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